

(최 초 [])
(년 분기 [])

고령자 고용지원금 (지급 부지급) 결정 통지서

1. 사업장 현황

사업장명		사업장관리번호	
사업장 주소		대표자	
담당자		전화번호	

2. 지급 내용

지원금 종류	지급 내용		
	지급대상 기간	지급 대상자수	지급결정액
고령자 고용지원금			원

3. 부지급(일부지급) 사유

「고용보험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5, 「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」 제12조

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

고령자 고용지원금을 (지급 부지급) 함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지방고용노동청(○ ○ 지청)장 (직인)

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

1.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2.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